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변창흠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되던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대상 도시철도 매입 감면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, 그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하려고 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및 카목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2의 비고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133